

공지사항

상공자원부장관 중국방문 결과 안내

1. 주요활동 및 성과

가. 제1차 한·중통상장관회담 개최

1) 협력에 바탕을 둔 한·중 통상관계의 기반구축

- 양국의 경제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경쟁보다는 협력확대 추진
- 이를 위해 무역은 물론 투자와 산업협력을 적극 추진

2) 우리기업의 대중진출 여건 개선

-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 무역제도 투명성 보장
- 수출대금 미수금 문제
- 무역거래 표준계약서 공동으로 작성, 보급

○ 우리업체가 추진중인 북경의 “Korea Business Center” 건립 및 “한국상회” 설립에 중국의 협조 약속

○ 이종과세 방지협정 및 항공협정의 조속한 체결

3) 통상마찰 소지의 사전 제거

- 향후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해 상호 노력
- 중국상품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및 반덤핑 조사 문제는 차별적 조치기 아니며 국제규범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고 우리 입장 전달
- 중국인에 대한 우리 세관의 엄격한 통관 검사 문제는 마약단속으로 불가피함을 설명

나. 한·중 산업협력합의서 서명 및 분야별 산업협력 추진

- 상공자원부와 중국의 국가경제무역위원회·회간의 “한·중산업협력합의서” 서명
 - 이에 따라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중산업협력위원회” 구성 금년중 서울에서 1차회의 개최

○ 기계공업부장, 전자공업부장, 화학공업부장 등 면담을 통해 분야별 협력방안 구체적 협의

- 특히 시장잠재력이 크고 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와 전전자교환기에 대하여 우리기업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

다. 기타 주요활동

○ 이풍청 부총리와 면담을 통해 양국간 무역 및 경제협력 기반구축에 관한 방안 협의

- 이 부총리 대전 EXPO방문예정 ('93.9.26. - 10.2)

○ 북경시를 방문하여 2000년 올림픽 북경 개최에 우리정부의 지지 입장표명. 우리기업의 활동여건 개선과, Korea Business Center 부지 확보 협조 요청

2. 중국시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방향

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

○ 광대한 국토와, 인구,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개혁, 개방정책 추진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 중국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전략을 추진해야 함

○ 선진 각국 및 아시아 경쟁국들은 정부가 앞서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시장 공략

○ 중국의 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활동과 의사결정이 정부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정부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 특히 중국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권한의 분장이나 의사결정과정, 각종제도와 절차가 복잡하고 모호하여 개별업체의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함

나. 대응방향

○ 교역의 균형적 확대를 통해 두나라가 동반자라는 인식을 굳건히 함

○ 우리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통

공지사항

- 해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기반 구축
- 양국간 산업구조의 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산업차원의 협력 본격 추진
- 중국시장에 대한 종합 정보망 구축
-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종합하여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 중국진출 종합대책” 수립, 시행
- 다. 당면 조치사항
 - 한중산업협력합의서에 따라 금년중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회의 서울에서 개최
 - 이에 대비하여 기계, 전자, 화학, 전력 업종별 산업협력 과제를 도출
 - 우리의 전략품목인 자동차와 전자교반기의 기술협약 체결 추진
 - 수출미수금 회수를 위한 실무협의,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 북경 “Korea Business Center” 건립계획 등의 차질 없는 추진
 - 중국측의 약속한 사항의 이행
 - 조정관세 신중 운영. 가급적 산업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하여 제도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 현재 계류중인 반덤핑조사(소다회)를 당사자간 대화로 원만히 해결토록 유도
 - 중국인에 대한 세관 검사절차 완화

일본 오사카시의 아시아 태평양무역센터(ATC) 등 일본의 수입유통시설 입주안내

일본정부는 무역확대 촉진을 위한 수입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의 주요 7개 지방에 수입 촉진지역(FAZ)을 지정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하여 수입촉진시설(화물하역 및 보관시설, 상품전시장, 도.소매업용 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입촉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동 7개지역중 제일 먼저 완공되어 '94. 4월

개설예정인 오사카 지역 FAZ(아시아·태평양 무역센터 ATC)에 우리기업들이 많이 입주, 일본시장 수출마케팅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에서는 동시 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주비용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기금 지원 등 자금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하에, 다음과 같이 아시아·태평양 무역센터 개요를 안내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참고하기 바란다.

〈ATC(아시아·태평양무역센터) 개요〉

- 소재지 및 규모
 - 소재지 : 大阪市 佳之江區 南港 코스모스 스퀘어
 - 규 모 : 부지면적 70,000m²
연 면 적 335,000m²
(이중 도매시장의 면적은 173,000m²)
- 시설내용
 -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상설도매시장과 식당, Amenity Zone, 국제회의장 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 완성개관일 : '94. 4월 예정
 - 입주기업 : ATC 개념에 적합한 일본국내 및 해외업체를 임대방식으로 입주시키며 수입품 중심의 도매를 하도록 함
 - 거래형태
 - 현물판매형 도매
 - 상품전시(쇼룸 포함)을 수반한 견본거래; 상담형 도매
 - 바이어 : 일본 국내외의 소매업 및 도매업의 전문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며 바이어는 전원 조직화 함
 - 수입관련 지원
 - ATC에서 보세거래 기능
 - 무역사무 수속대행, 집품, 유통기공, 품질

***** 공지사항 *****

관리, 통역, 번역, 상품개발 등의 지원

- 관련시설
- ATC내 공동창고(보세창고 포함) 이용 가능
- 수입, 통관, 보세수속 : ATC내 무역·통관센터 이용 가능
- 판촉 : 바이어 회원 정보지의 발행 및 빈번한 이벤트 개최 등으로 바이어 동원 가능
- 상품정보 : 해외기업 및 일본 국내 중소도소매 업자에게 최신 상품 정보의 제공, 수입거래 알선정보, 거래증진과 연결되는 각종 정보의 제공
- 기타 : 전시장, 회의실, 상담실, 공동사무센터 이용가능
- 기대효과
- 대 일본 수출기지로 이용
- 일본 국내시장의 도매기지로 이용
- 일본 소매업자의 사업기지로 이용
- 임대조건
- 임대료 : ₩17,000/3.3m²
- 보증금 : 임대료의 36개월분(단, 한국은 3개월분)
- 공익금 : 실비상당분(월₩6,000/3.3m² 예정)
- 임대면적 : 원칙적으로 최저 165m²(50평)(50평 이하의 면적을 원하는 경우 별도 상담)
- 내부시설 : ATC가 부담(단, 사무집기 제외)
- 임대료 및 공익금 합계 : 월 ₩23,000/3.3m²로 되어있으나 향후 24개월은 월 ₩10,000/3.3m²으로 책정되었음

본회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89. 9월부터 수입S/W 도입대가에 대해 원천소득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이의 철회를 건의('93. 6. 3)하였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과세방침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본회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방침을 수정보완하여 본회에 통보하여 오는 바, 이를 회원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판정 지침〉

1. 저작권 사용료 소득

컴퓨터 소프트웨어 국내도입자(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국내도입자"라 한다.)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공급자"라 한다.)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저작권법 제10조에 규정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국내도입자가 저작권자인 외국공급자와 체결한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9호(가),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가) 및 각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상의 사용료 조항에 규정한 "저작권"의 사용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임

2. 「노하우」 사용료 소득

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과세대상여부 판정지침 안내

공지사항

의 도입대가는 일시불 지급조건 또는 경상 지급조건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9호(나), 소득세법 제134조 11호(나) 및 각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상의 사용료 조항에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이하 ‘노하우’라 한다.)”의 사용대가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임

(1)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구 기술용역육성법)등에 의하여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 국내도입자가 외국공급자로부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2) 상기(1) 이외의 경우로서 국내도입자가 다음에 예시한 각호의 1에 해당 되어 노하우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하고 외국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특정한 사용장소나 사용대상, 사용빈도, 사용기간 또는 사용에 따른 생산성, 생산 또는 처리된 제품 또는 정보의 양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경우

(나) 국내도입자가 원하는 대로 외국공급자가 설계하여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당해 도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 국내도입자가 도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공급자의 허락없이 당해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거나 사용허여할 수 없는 경우

(마) 외국공급자가 국내도입자 또는 그 소속 직원 등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상의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또는 동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훈련 또는 교육을 시킬 경우

(바) 기타 도입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술

수준 및 지급할 도입대가의 가액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내에서 판매, 공급할 목적으로 상기 (2)각호의 1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외국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료]

소프트웨어 지급대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기 2 “가” (2), (3)의 규정에 의한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원천징수 대상에서 되지 아니함.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 이더라도 그 지급대가가 상기 1에서 말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 대상임

(1) (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공급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진 정형화된 사용허여 계약서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포장 또는 그 내용 속에 내장되어 있어 최종 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또는 사용개시 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예컨대 shrink-wrap licence agreement)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나) 국내도입자가 외국공급자와 저작권 양도 양수계약이나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외국공급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술지원을 받지 아니하며, 최종 사용자가 스스로 간단한 사용설명서(예, 가전제품이나 탁상용 전자계산기의 사용설명서 등과 같은 것)만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다만, 상기 (가), (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또는 당

공지사항

해 외국공급자가 그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케 함으로써 외국공급자의 허락없이 동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는 2 “가” (2), (3)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됨.

(2)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다만, 이미 개발되어 불특정 수요자에게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예정인 노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자의 필요에 맞추어 개작(modify)하여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됨

(3)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를 도입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당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서 도입하기 때문에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당해 ‘하드웨어’ 가격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가격으로 도입되는 경우. 다만, ‘하드웨어’의 일부로서 도입되는 소프트웨어가 동소프트웨어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3. 원천징수 의무자

소프트웨어의 외국공급자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소프트웨어 국내도입자가 외국공급자와 체결한 저작권 양도 양수계약, 사용허여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당해 국내도입자

나.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공급자와 사용허여계약(licence agreement)을

체결하고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국내수요자에게 재사용 허여계약(sub-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업자

다. 국내 리스회사가 외국의 소프트웨어의 공급자와 체결한 사용 허여계약에 의하여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국내 최종 사용자에게 재사용 허여계약에 의하여 당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 리스회사. 이 경우, 당해 리스가 금융리스 인지 또는 운용리스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국내리스 회사가 동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인도네시아 도착 상용사증제도 실시 안내

인도네시아정부는 1993.8.16 부터 외국인 투자 및 수출입 업무활동의 편의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45개국 국민에 대하여 2개월 기한의 도착상용사증을 발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정부는 종전 2개월 기한의 도착 관광사증을 발급하고 관광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상용활동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단기 상용목적 방문 시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상용방문에 애로가 있었던 바, 금번 조치로 외국인의 투자 타당성조사, 수입활동, 전시회 참가 확대와 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조치로 상용목적의 입국은 개방하였으나 동제도를 악용하여 상용사증 소지자가 취업, 종교활동 등 상용이외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엄격한 규제가 예상되므로 도착 상용사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도착 국제공항에서 사증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를 당하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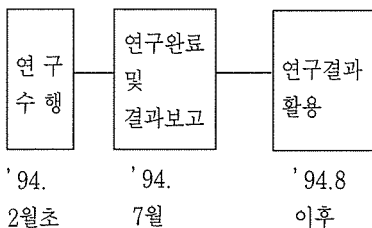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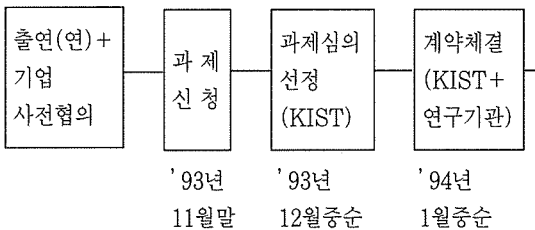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총연구비 규모 : 1과제당 500~1,500 만 원 이내
 - KIST 한·러센터 및 참여기업의 부담비율은 각기 50%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의 내용에 따라 센터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제한된 연구의 규모로 인해 한 기관에서 다수 과제 신청시 우선순위 부여 요망.
- 연구비 계상범위 :
 - 인건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비 및 기타 내부흡수성 경비이외의 비목 계상.
- 연구기관 : 6개월 이내 ('94. 2월초 착수 예정)
- 연구결과 보고
 - 계약개시일로부터 3개월후 중간보고서 제출, 6개월후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분량은 A4용지 100매내외이고, 양식은 본센터 고유양식.
- 연구결과 활용
 - 주관 연구기관이 연구결과 기업화가 유망하다고 판단 되는 과제는 참여기업이 우

- 선적으로 기업화를 추진함.
- 기업화 성공시 해당 활용기업으로부터 KIST 한·러센터 부담 연구비를 회수하여 타 검색사업 수행을 지원함.
- 2. 추진체계 및 일정
- 3. 계획서 작성
 - 연구계획 양식은 별첨(1)에 따라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총 10부를 한·러센터 기술협력실에 제출함.
 - 연구과제 신청시 별첨(2)의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첨부함.
 - 환율은 미화 1\$당 770원, 연구비 계상시 천원단위 이하는 절삭함.
 - 연구비 비목별 해소 및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처의 "1993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93.6)"을 준용함.
- 4. 문의처 :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Tel 962-8801)

기업의 특허관리 성공사례 발표 개최 안내

최근 신진 외국 기업의 특허침해 제소로 인해 다수의 국내업체가 신제품 개발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행 기술 조사없이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이라도 특허 등록 또는 수출 상품화가 되지 못하고 연구 개발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등, 어려운 특허 분쟁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허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상반기에 이어 '93년도 하반기 기업의 특허관리 성공사례 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을 바랍니다.

1. 일시 : 1993년 11월 17일 14:00~17:00
2. 장소 : 특허청 7층 회의실
3. 주최 : 특허청
4. 주제 : 우수 특허관리 성공사례



공지사항

5. 발표자 : 삼성전자(주) 특허부장 김인영
(주)삼보컴퓨터 기획부장 목현상
(주) 상아프론테크 연구소장 이문득
6. 참석대상 : 기업 임직원 및 특허 전담자,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특허협회 직원 등 지적재산권 분야 종사자, 특허청 직원, 기타 관계자
7. 참가비 : 무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전자심사담당 관실(568-6083)로 문의 바랍니다.

4. 주관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EIAK)
EC 집행위원회 (Commission)
5. 일정 : 12월 1일(수) 09:30~16:30

발표내용	연사
① EC의 대외 통상 정책	질아누이 주한 EC 대표부 대사
② EC의 시험검사 및 인증 제도	유럽 전자표준화 기구 Dr Jacky/Humbeack
③ EC의 정보산업 육성방안	EC집행위. Dr. Galway Johnsson
④ 한국의 대외 무역 및 산업정책.	상공자원부 이희범 전자정보산업국장
⑤ 한국의 시험검사, 인증, 라벨링 제도	공업진흥청 서창수 국제표준과장
⑥ 한국의 전자산업 시장현황 및 성장 유망분야	삼성전자(주) 강진구회장

한·EC 전자산업 포럼 개최 안내

본회는 한국 전자산업의 국제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전자제품의 주력 수출시장이며, 시장통합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EC의 대외 통상정책, 정보산업 육성방안 그리고 표준화 제도에 관한 이해 증대 및 한·EC 전자업계간의 통상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EC 집행위와 공동으로 포럼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EC 집행위의 지원하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행사에는 EC 집행위내 고위인사들을 포함한 30여명의 EC 업계 대표들이 내한, 전자산업 세미나 개최와 함께 양국 전자협력 관심품목 협의 및 개발상담회를 가질 예정인 바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목적
 - 한·EC 전자분야 산업협력 증대
 - 한·EC 전자업체간 사업기회확대 및 전략적 제휴 모색
 - 한국전자산업에 대한 대외인식 제고
2. 일자 : '93. 12. 1 (수)~3(금)
3. 장소 : 상공회의소 (회의실)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재개 안내

상공자원부공고 제1993-93호
대외무역법 제4조에 의거 아이티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다음과 같이 재개함을 공고합니다.

1993. 11. 4.
상공자원부장관

상공자원부공고 제1993-75호('93.9.13.)로 잠정 정지한 아이티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상공자원부공고 제1993-58호:'93.8.2.)의 재개를 공고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공고는 199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